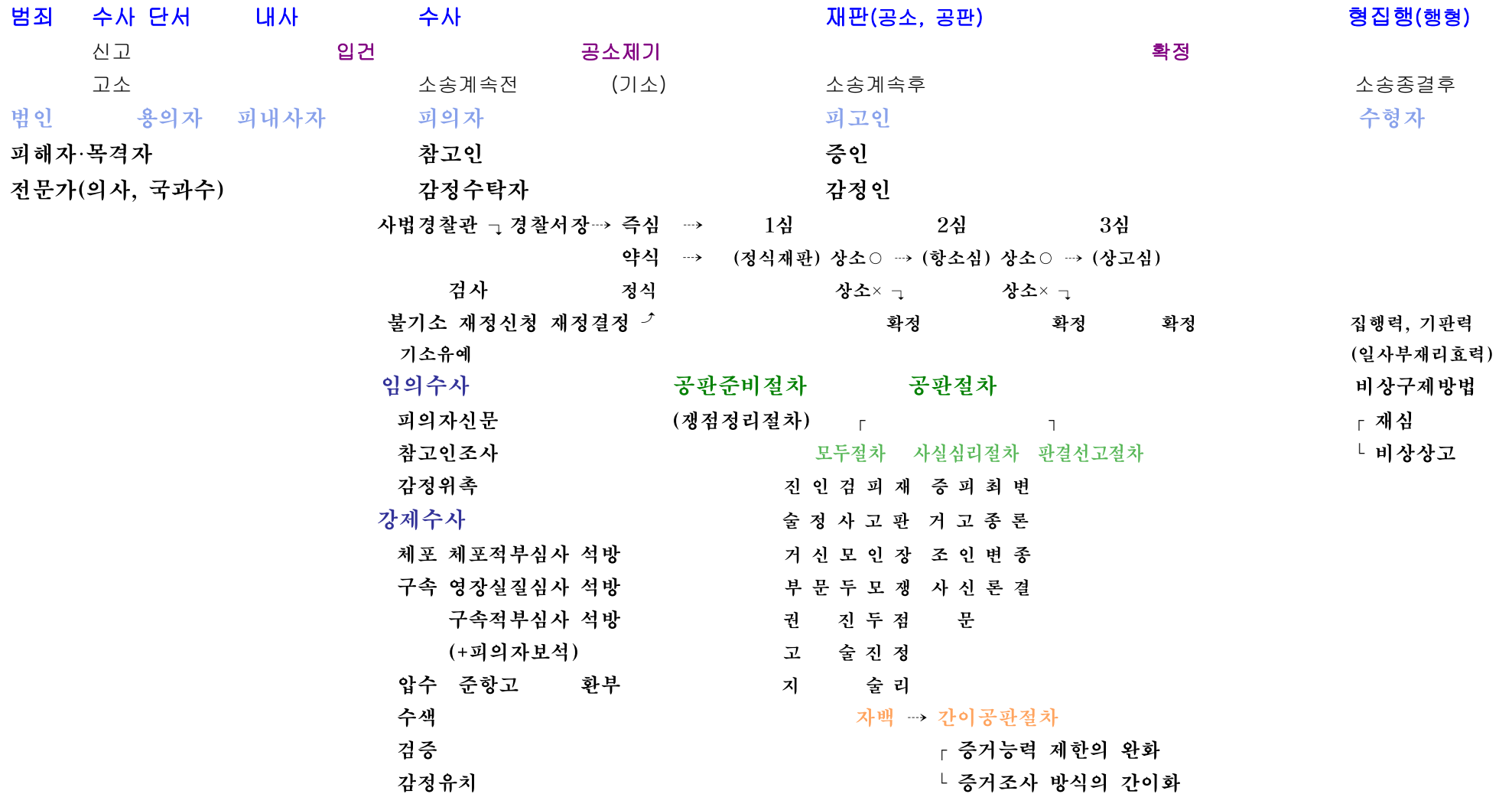


단계별 형사절차



형식재판(조건재판)

- 관할위반판결
- 면소판결
- 공소기각판결
- 공소기각결정

실체재판(본안재판)

- 유죄판결 → 「 형면제
- 무죄판결 선고유예
- 집행유예
- ㄴ 사형, 징역, 벌금

*** 증거능력(증거로서의 자격) - 증거능력의 제한**

-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∴ 위법수사의 억제 절대적 법칙
- 자백배제법칙(자백의 임의성법칙) ∴ 위법수사의 억제 절대적 법칙
- 전문법칙 ∴ 반대신문권 보장 상대적 법칙

*** 증명력(증거의 실질적 가치, 신빙성)**

- 자유심증주의 ↔ 증거법정주의
- 자백보강법칙

상소

1심	2심	3심
수소법원		
판결	항소	상고
결정	항고(일반항고)	재항고(특별항고)
구속취소결정	ㄱ 즉시항고(집행정지○, 7일내, 명문규정○)	
보석결정	ㄴ 보통항고(집행정지×, 기간제한×, 명문규정×)	

재판장, 수명법관	소속법원(합의부)	
구금, 보석, 압수, 환부	준항고(제416조) (상소는 아님)	재 항고 (상소임)
검사, 사법경찰관	관할법원	
구금, 압수, 환부, 변·참	준항고(제417조) (상소는 아님)	재 항고 (상소임)